



▶ 2009. 4. 8 배포
▶ 총 11 쪽

보도자료

▶ 산재보험과 과장 조병기
서기관 김상용

T E L : 02) 2110-7220

E-MAIL : KSY814@molab.go.kr

F A X : 02) 507-3734

진폐재해자에 대한 보상을 연금으로 개편

- 제도개선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진폐재해자가 매달 월 48만원 정도의 연금혜택을 받을 전망

■ 노동부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그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보상하던 것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4월 13일 입법 예고함

<제도개선 방향>

- 생애기간중에는 진폐재해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진폐로 사망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보상체계 마련
- 노동부는 진폐에 걸린 것으로 판정받은 근로자(진폐재해자)에 대해 생애기간중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로 사망시는 그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 진폐재해자 생애기간에 지급하는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됨

-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재해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진폐재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50%('09년 48.7만원/월)를 지급

-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재해자의 장해수준을 반영하여 차등지급 하되, 진폐 장해등급간 장해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함

※ 1~3급은 평균임금의 132일분(월 11일분), 5~7급 72일분(월 6일분), 9~13급 24일분(월 2일분)

<진폐보상연금 수준 예시>

예 1) 평균임금 80,000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진폐 장해 13~3급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 48.7만원과 진폐장해연금 16~88만원을 합한 64.7~136.7만원을 매달 받게 됨

※ 현행 보상체계에서는 13급은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약 792만원(80,000원x99일분)을 받고, 3급은 월 171만원의 연금을 받음.

- 합병증이 있으면 장해등급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으면서 월 168만원 정도의 휴업급여를 받음.

예 2) 과거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진폐재해자인 경우에는 장해급여는 이미 받았으므로 진폐장해연금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48.7만원만을 매달 받게 됨

○ 또한,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진폐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생전 진폐재해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그 외 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와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에 진폐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기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진폐재해자 생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됨.
- 다만, 현재 요양중인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장해·유족연금 수급자도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할 계획임

■ 제가(비요양) 진폐재해자에 대해 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진폐재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현행제도 개요>

- 현재 진폐에 대하여는 일반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
 -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

<장해급여표>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9급		385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3급		99일분

※ 1~3급은 연금, 5~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가능, 9~13급은 일시금 지급

- 다만, 합병증이 있을 경우 요양(치료)과 함께 휴업급여(또는 상병 보상연금)도 병행 지급하고 있음
 - ※ 합병증은 현재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미코박테리아감염, 원발성 폐암 등 9종을 인정
 -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하고 있음(평균임금 80,000원인 경우 월 168만원)
- 또한,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 ※ 현행 유족연금 수준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52~67/100
 - ※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현행제도의 문제점>

- 진폐재해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 치료는 물론 상당한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합병증을 선호하게끔 유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 실제로 일단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시까지 계속 입원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있음
 - ※ '08.12월말 현재 진폐재해자는 17,500여명이며, 그중 요양환자는 3,740명
- 진폐 합병증의 경우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에 따라 관련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08년도 진폐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885억원으로 전체 산재 보험급여 3조 4219억원의 8.4%를 차지
- 따라서, 일부 진폐단체는 요양을 하고 있지 않은 재가 진폐 재해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반면,
 - 경영계 및 전문가들은 진폐재해자의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여옴

<제도개선안 마련 경위>

- 노동부는 '07.11월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08.10월까지 1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안을 확정

※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10명)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중기협, 노동부 2명, 외부전문가 4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 합병증을 기대하는 부조리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제도개선을 통해 합병증에 따른 휴업급여를 기대하는 부조리한 점이 해소되고,
 - 진폐재해자 사망 후 자손에게 보상하는 대신 생애기간중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진폐재해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노동부는 개정법률안을 4.13(월)부터 입법예고하고, 4.14(화) 15:00에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관련단체 및 전문가, 진폐재해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방안 마련(안 제47조의2)

- 진폐요양과 관련하여 입·통원기준 및 표준진료지침을 정하고, 진폐증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진폐요양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진폐판정 절차 도입(안 제91조2부터 제91조의4까지)

- 진폐판정은 진단 신청, 진단기관 지정, 진단 실시, 진폐·장해판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요양기준, 장애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진폐 관련 보험급여의 종류 개정(안 제91조의5)

- 장애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대신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4. 진폐보상연금제도 도입(안 제91조의6)

-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
 - 기초연금은 1일 최저임금액의 5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진폐장해연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진폐장해연금표

진폐장해등급	진폐장해연금
제1급, 제3급	132일분
제5급, 제7급	72일분
제9급, 제11급, 제13급	24일분

5. 진폐유족연금 제도 도입 및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기준 등 신설(안 제91조의7, 제91조의8)

- 유족급여는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유족일시금은 폐지
- 진폐로 인한 사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신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6.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중인 자는 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요양중인 자가 계속 요양을 하다 진폐로 사망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 지급
- 기타 장애연금수급자, 장애일시금수급자, 장애등급변경자,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붙임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진폐관리구분 판정 대상자 조정(안 제18조)

- 진폐관리구분 판정의 대상에서 이직자를 제외함

2. 진폐위로금의 종류, 지급기준 등 변경(안 제24조, 제25조)

-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하고, 진폐재해자가 진폐판정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지급
- 진폐보상위로금액은 평균임금에 다음 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토록 함

진폐보상위로금표

장해등급	진폐보상위로금
제1급	1,040일분
제3급	849일분
제5급	677일분
제7급	526일분
제9급	387일분
제11급	288일분
제13급	215일분

진폐재해자별 급여개정 내용

가점산규	구 분	현 행	개정안	
신규 진폐 판정자	요 양 * 기존판정자중 신규요양자 포함	요양급여, 휴업급여·상병 보상연금, 진폐위로금	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 보상위로금	
	비 요 양	장해급여, 장해위로금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위로금	
	유 족	유족연금(유족일시금), 장의비, 유족위로금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기존 진폐 판정자	요 양	요양급여, 휴업급여·상병 보상연금, (진폐위로금)	기존과 동일	
	비	장해일시금 수급자	장해일시금	진폐보상연금중 기초연금만 지급, (유족위로금)
		장해연금 수급자	장해연금	기존권리 보장, (유족위로금) * 장해연금과 진폐보상연금 중 높은 수준 적용
	요	장해연금 수급자	장해연금	기존권리 보장, (유족위로금) * 장해연금과 진폐보상연금 중 높은 수준 적용
	양	장해등급 변경자		- 장해연금 수급자의 경우 에는 장해수준에 따라 연금 조정 * 장해재판정 다음달부터 - 장해일시금 수급자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한 진폐장해연금 지급 - (장해위로금 변동분)
	유 족 (유족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유족연금	기존권리 보장
미래의 유족	유족연금(유족일시금), 장의비, 유족위로금	유족연금(유족일시금), 장의비, 유족위로금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유족 위로금 * 현재 요양중인 자는 현 유족 급여 규정 적용	

※ 진폐위로금은 현행대로 8대광업 종사자에게만 지급

<붙임 4>

진폐요양 및 보상관련 통계

1. 진폐재해자 현황

- 생존 진폐재해자 추이 : 16,929명('03) → 17,224명('04) → 17,366명('05) → 17,566명('06) → 17,542명('07)

※ 향후 생존 진폐재해자 추계('03~'07년간 평균변동률 적용) : 17,815명('10년) → 18,549명('15년) → 19,386명('20명)

- 분진작업 경력자는 매년 진폐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 5,000여명이 진폐판정을 받고 있음

<연도별 진폐장해판정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
'04년	4,820	36	72	140	153	1,659	2,760
'05년	5,182	126	168	300	149	1,896	2,543
'06년	5,055	118	172	314	173	1,985	2,293
'07년	4,759	162	133	332	163	1,820	2,149
'08년	4,808	122	137	326	175	1,800	2,248

※ 신규 진폐판정자 추이 : 2,823명('04) → 2,113명('05) → 982명('06) → 855명('07) → 657명('08)

※ 신규 진폐판정이후 장해판정의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진폐재해자수와 장해판정수는 차이(장해등급 차이가 날 경우 장해급여 추가지급)

2. 요양현황

- '08.12월말 현재 진폐요양환자는 3,740명(입원 3,192명, 통원 548명)

<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단위 : 명)

계	6월미만	6월~1년	1~2년	2~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3,740	50	168	390	370	669	1,214	879

<합병증별 영양환자 현황>

(단위 : 명)

계	폐결핵	홍막염	기흉	기관지염	원발성 폐암	폐기종	폐성심	기관지 확장증	미코박테리아	F3	4C 1/2↑	기타
3,740	1,528	202	238	241	96	607	44	147	6	244	147	240

3. 진폐 보상규모

□ 보험급여(산재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급여별 연도별	총 계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 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04년	213,778	76,003	24,940	45,223	30,544	37,068	
'05년	242,028	79,093	27,874	51,361	41,020	42,679	1
'06년	256,393	83,740	32,828	55,196	31,859	52,770	
'07년	274,124	84,017	37,180	58,498	34,495	59,919	15
'08년	288,519	87,713	39,097	65,988	32,580	63,141	

□ 진폐위로금 등(에너지 및 자원관리 특별회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04		'05		'06		'07		'08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계	21,301	56,909	23,163	50,576	22,346	50,218	29,019	57,178	34,947	53,051
위로금	3,997	53,678	3,031	47,070	1,895	46,256	1,981	52,060	1,764	47,449
- 장해	3,205	19,537	2,514	23,187	1,309	15,718	1,353	19,299	1,203	18,252
- 유족	792	34,141	517	23,883	586	30,538	628	32,761	561	29,197
건강진단	17,252	3,180	20,079	3,468	20,391	3,904	26,980	5,070	33,136	5,551
학자금	52	51	53	38	60	58	58	48	47	51